

국방부령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군 군간부후보생 정원은 지속 감소로 학군단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제한되어 학군단 설치 인원 기준을 50명에서 학군사관후보생은 40명,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0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423호, 2017.11.14. 공포·시행) 됨에 따라 용어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 교육과정에 부합하게 미사용 용어를 삭제하여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을 지휘관리학, 화기학, 전술학으로 수정하고 학군 군간후보생 선발 시 신원조사를 하는 것만이 아닌 그 결과를 어디에 반영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최종 심의에 반영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또한, 현 평가제도에 맞게 종합평가를 임관종합평가로 용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화하였으며, 상위 근거 없이 각 군별 협의로 시행하는 육군 ROTC 중 해병대 선발자들에 대한 해병대 임관 전 교육을 규정화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8423호, 2017.11.1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을 “학군사관후보생은 40인이상,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0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일반학”을 “지휘관리학”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마쳐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심의에 반영한다”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종합평가로”를 “임관종합평가로”로, “종합평가를”을 “임관종합평가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종합평가”를 각각 “임관종합평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상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병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적사유를 제외하고 선발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하여 선발된 자에 대한 해병대 임관 전 교육은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협의하 세부 교육운영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이 경우 후보생들의 병적전환은 해병대 임관 전 교육 시행 시점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제3조”를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 지원서”를 “학군군간부후보생 지원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제7조에 따라 학군무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7조에 따라 학군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호서식) 중 “목 학군무관후보생”을 “목 학군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 중 “목 학군무관후보생”을 “목 학군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① (생략)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u>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 이상</u>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②----- ----- <u>학군사관후보생은 40인 이상,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0인 이상</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교과과정등) ① · ② (생략)	제4조(교과과정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u>일반학</u> ,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 <u>지휘관리학</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선발) ① ~ ④ (생략)	제8조(선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u>마쳐야 한다</u> .	⑤----- ----- ----- ----- <u>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심의에 반영한다</u> .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	제9조(선발 상황 보고) -----

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평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후단 신설>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 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

----- 별지 제 3호서식-----
-----.

제11조(교육평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임관 종합평가로 -----

----- 임관종합평가를 -----.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임관중

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④ 교내 교육평가·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병적관리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합평가-----
-----.

④ -----

----- 임관종합평가-----

-----.

제13조(병적관리등) ①-----

----- 별지 제4호
서식-----

-----.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상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병대 군간부후보생으

<신 설>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 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로 선발된 자는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적사유를 제외하고 선발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하여 선발된 자에 대한 해병대 임관 전 교육은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협의하 세 부 교육운영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이 경우 후보생들의 병적전환은 해병대 임관 전 교육 시행 시점으로 한다.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

--- 별지 제5호서식-----

-----.

-----.